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강석주, 김동욱,
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
남창진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
서상열, 송재혁, 오금란,
왕정순, 유정희, 이상훈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한·신,
허·훈, 홍국표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, 폭한, 대기오염 심화로 온열·한랭 질환 및 감염병이 증가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을 마련하도록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89호, 2024. 12. 20. 일부개정, 2025. 6. 21. 시행)됨.
- 이에 ‘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’에 「보건의료기본법」 개정내용을 반영하여,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촉진하고, 시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항목에 ‘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’을 추가함.(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
시책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5조(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) ① (생 략)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·6. (생 략)</p>	<p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5조(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</u></p> <p>6.·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의 개정사항¹⁾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²⁾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³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

[참고] 상위법령 개정사항 [시행 2025. 6. 21.] [법률 제20589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37조의2(기후변화 보건의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4. 12. 20.]

2)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명시될 경우 비용발생의 여지(사업 이행가능성)가 있어 이에 따른 비용변화를 검토하였음

3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폭염·감염병 대비 시민건강 보호를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[참고] 폭염·감염병 대비 시민건강 보호

○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

-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('21년 29만건 → '26년 34만건)

- 폭염·한파 정보 전달체계 및 저감시스템 운영 강화

-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'온서울 건강온' 활용,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기후재난 정보 신속 제공

○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 통한 신종 감염병 대응

- 감염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

- '24시간 긴급상황센터' 설치·운영('24년)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

※ 자료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「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(2022-2026)」(환경정책과-2543, 2022. 2. 21.)